

인천 연수를 국회의원 정일영

품격있는 정치 일하는 국회로 보답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23. 08. 30.(수) 담당: 이재희 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55, 송도이안상가 206호

T 02 784 6651~3 F 02 6788 7215
T 032 832 2729 F 032 833 2729



정일영 의원, 경로당 관리·운영 책임자 보조금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 가파른 노령화 추세에 지역사회에서 주요 역할 수행하는 노인정... 실상은 노인정 관리·운영 책임자 무보수 봉사직에 운영 책임자 모집 난항
- 지자체별 아·통장의 처우 개선과 활동위한 금전적 지원 이뤄져... 경로당의 경우 관리·운영 책임자에 대한 보수 지원 법적 근거 부재
- 정일영 국회의원, “노령화 추세에 따른 경로당 증가에 대비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경로당 관리·운영 책임자에게도 금전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30만 명에 육박,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경로당에 다양한 시설 등의 지원 정책을 펼쳐가고 있으나 경로당 관리·운영 책임자에 대한 보수 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상적인 경로당의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은 29일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노인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체계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마을 단위를 관리하는 이·통장의 경우에게는 인당 연평균 300여만 원이 넘는 금전적인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로당 회장이나 지회장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어 지자체 대부분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추가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이들의 활동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함에 따라 향후 노인 복지 서비스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의 산

업화와 경제 성장의 주역이신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법률안 내용 첨부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8. 29.

발 의 자 : 정일영 · 이동주 · 노웅래
한준호 · 김주영 · 김병기
이용빈 · 박상혁 · 정성호
홍성국 · 이성만 · 신동근
홍기원 · 김종민 · 조정식
송재호 · 김민철 · 홍영표
의원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2022년 기준 926만7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에 따른 경로당의 증가로 운영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 등을 경로당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들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항제4호의3 및 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24條(地域奉仕指導員 위촉 및 업무) ① (생략)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奉仕指導員의 업무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 4의2. (생략) <u><신설></u> 5. (생략) <u><신설></u>	第24條(地域奉仕指導員 위촉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의2. (현행과 같음) <u>4의3.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u> 5. (현행과 같음) ③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지역봉사 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